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운영규정	규정번호	3-4-23
		제정일자	2020.07.13.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의료정보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프로그램의 소속과 전입

제3조(프로그램의 소속) 2020학년도 1학기 의료정보과로 신입학한 학생부터 본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프로그램의 전입) ① 프로그램 소속이 아닌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전입대상학생을 위하여 매학기 첫 주에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다.

③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1]의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와 직전 대학 또는 계열/학과의 성적증명서를 지도교수를 통해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에서는 전입희망학생이 제출한 제3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대체 교과목 인정 여부를 판정하며, 대체 인정 결과 및 전입 허가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⑤ 전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프로그램

제5조(프로그램의 교육목표)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산업체, 졸업생, 교수, 재학생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에서 설정한다.

②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는 3년 주기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검토한다.

③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 및 적절성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HIM)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조사, 분석한다.

④ 설정 또는 개선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제6조(프로그램의 편성) 프로그램은 정평원의 교과목 이수체계에 근거하며, 프로그램 이수과 졸업에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학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프로그램 최종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목은 프로그램 최종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 필수이수 교과목(이하 ‘필수이수 교과목’이라 한다)과 프로그램 특성화 선택이수 교과목(이하 ‘선택이수 교과목’이라 한다)을 50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③ [별표 2]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 이수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별표 3] 보건의료정보관리 선택 이수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의 학습성과) ①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는 매학기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과 성취도를 평가한다.

② 학습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학기별 운영된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③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해 운영된 교과목의 교육내용의 범위, 수준, 방법, 평가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다.

④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는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지속적 질 개선을 위해 매학기 정기적으로 교과목별 성취도 분석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개선과 프로그램 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⑤ 교과목 성취도 미달성자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 향상교육 및 계절학기 운영 등의 추가학습 기회를 통해 학업 성취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프로그램의 최종성과) ①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설정한 인재상과 정평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설정한다.

②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학내 시설 및 신입생 OT 자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교과목 이수체계

제9조(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 ①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이수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표 4] 교과목 이수체계를 따른다.

② 교과목 이수체계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학내 시설, 학과 신입생 OT 자료 등에 공지한다.

③ 프로그램의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에 따른 “선수·후수” 이수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교과목 이수체계에 표기하고 공개한다.

④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후수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인증과정의 모든 학생들은 [별표 5]의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연계된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 인정) ① 휴학 및 복학, 제적 및 재입학, 편입학, 기타 프로그램책임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가 불가능한 학생은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을 만족하고 담당과목 교수가 승인하는 경우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선행교과목 퀴즈에 합격한 학생
2.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선행교과목 구술 테스트에 합격한 학생
3. 선행교과목 연구 보고서 제출한 학생
4. 기타 프로그램책임자 및 지도교수가 이수체계도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한 학생

②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수체계도 준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1조(프로그램의 이수포기) ① 프로그램 소속의 재학생은 소속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포기하고 프로그램 외 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2] 프로그램 이수포기 신청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는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미달성자 관리) ①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는 인증과정 졸업요건 미달성자 명단을 의결하고, 학생 확인을 통해 대학 본부에 명단을 제출한다.

제5장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

제13조(졸업이수학점)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대학 학칙에 따른다.

제14조(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요건) 정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2]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 이수 교과목과 [별표 3] 보건의료정보관리 선택 이수 교과목에서 총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하고 위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자격을 부여하며 학위 명칭에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을 부기한다.

제6장 프로그램책임자

제15조(프로그램책임자) ① 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책임자를 둔다.

② 프로그램책임자는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프로그램책임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한다(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은 제외한다).

④ 프로그램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등을 총괄한다.

⑤ 프로그램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7장 운영체계

제16조(위원회 설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의료정보과운영위원회, 의료정보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과 교수가 될 수 있으며, 위원은 의료정보과 교수, 타학과 교수 및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 ①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는 학기별 학년별 학습성과 달성, 학습성과 평가체계, 교육과정의 품질 평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의결과 인증과정의 관리를 담당한다.

② 의료정보과학습성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책임자로 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 각 위원회의 지침에 준한다.

제20조(교수업적평가) ① 프로그램 운영활동(보건의료정보관리 교과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책임자 및 교수에게는 교수업적평가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 개선활동(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활동,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과 관련된 평가 참여 활동,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및 출제 참여활동 등)에 참여한 교수에게는 교수업적평가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지도

제21조(학생지도) ① 지도교수는 대학 학칙의 지도교수운영규정 범위 안에서 운영되며 학생회, 전공동아리 및 학생활동을 지도·육성한다.

② 지도교수는 전담지도 교수제로 교수·학생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우며, 학습,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면담을 시행한다.

③ 프로그램책임자는 신입생, 프로그램 전입자를 대상으로 OT를 통해 프로그램 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지도 계획을 공지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를 통해 교과목 이수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0 년 7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정보과운영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로 폐지한다.